# 2019년도 우정9급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
#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

## Ⅰ 신청 대상

○ 2019년 우정9급 우정서기보(계리)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**원서접수 마감일까지**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
- **시각·지체·뇌병변**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○ 기타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

## Ⅱ 신청 절차

| | |
|---|---|
| **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** | 장애유형별 편의지원계획 안내 내용을 참조하여, 본인의 해당 여부 · 지원요건 ·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 |
| ⇩ | |
| **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** |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기재 |
| ⇩ | |
| **구비서류 제출** | 본인이 신청하는 편의신청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일체를 충청지방우정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<br>○ **제출기한 : 2019. 8. 6.(화) ~ 8. 9.(금)**<br>**※ 제출 마감일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**<br>**[서류 제출처] : 충청지방우정청(붙임)으로 송부**<br>**※ 하지지체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팩스로 송부 가능** |

## Ⅲ 편의지원 관련 유의사항

1. **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 내용을 반드시 숙지**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해당 여부,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 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   *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(정도)에 해당되는지 참조한 후, 장애인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**의사진단(소견)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**)

2. 의사진단(소견)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**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(2017. 8. 9. 이후 발급)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**하게 인정됩니다.

   ※ 임신부의 경우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.

   ※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→ [병원・약국 찾기]를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 (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의 면허번호, 서명(날인)이 기재되어야 함)

3. 의사진단서(소견서)에는 **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, ②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항목과 필요성 인정 여부**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.

   ※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안내에 예시된 각 **장애유형별 의사진단서 샘플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해당 사항(밑줄 참조)을 누락됨 없이 진단서에 확인**받으시기 바라며,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**의사진단서에 따른 편의를 제공**합니다.

   ※ **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,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.**

4. 의문사항 발생 시 **반드시 사전에 붙임의 해당 서류 제출처로 문의하신 후 처리**하시기 바랍니다.

# Ⅳ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안내 등

## ▣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.3미만인 자

| | |
|---|---|
| 구비서류 | 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<br>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<br>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<br><br>※ **제출기한: 2019. 8. 9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<br>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<br>① 두 눈의 교정시력(좌, 우 각각 명시)<br>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<br>ex)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.1, 우0.2에 해당하는 자로서,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(A4 크기)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|
|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| 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<br>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<br>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<br>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60분 → 70분** |

## ▣ 시각장애인 중 기타 시각장애인

| | |
|---|---|
| 구비서류 | 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<br>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<br><br>※ **제출기한: 2019. 8. 9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|
|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| 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<br>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<br>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|

## 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〔舊 1~3급〕 · 상이등급〔1~3급〕

| | |
|---|---|
| 구비서류 | 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<br>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<br>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<br><br>※ **제출기한: 2019. 8. 9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<br>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<br>① 뇌병변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<br>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<br>* 뇌병변장애인으로서 장애등록 시 지체장애로 기재된 자 동일<br>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<br>ex)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손, 목,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 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 능력이 현저히 손상되어 필기 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|
|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| 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<br>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<br>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<br>▶ **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**<br>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60분 → 70분** |

## 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〔舊 4~6급〕 · 상이등급〔4~7급〕

| | |
|---|---|
| 구비서류 | 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<br>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<br><br>※ **제출기한: 2019. 8. 9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|
|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| 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<br>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<br>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|

## 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〔舊 1~3급〕· 상이등급〔1~3급〕

| | |
|---|---|
| 구비서류 | ≪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 진단서 원본≫<br>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<br>▣ **의사진단서**: 시험시간 연장 신청의 경우만 제출(**소견서 불인정**)<br>※ **제출기한: 2019. 8. 9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<br>※ **의사진단서 필수 기재사항**<br>① 상지 지체장애로 인한 필기능력 장애의 정도<br>*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기재<br>② 신청한 편의지원 내용 및 제공의 구체적 필요성<br>ex) 상기인은 지체장애 정도가 심한 자(구 O급)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며,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 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|
|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| 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<br>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<br>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<br>▶ **별도시험실 배정(좌석 간격 조정)**<br>▶ **시험시간 연장(1.2배): 60분 → 70분** |

## ▣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〔舊 4~6급〕· 상이등급〔4~7급〕

| | |
|---|---|
| 구비서류 | 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<br>▣ **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<br>※ **제출기한: 2019. 8. 9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 |
|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| ▶ **확대문제지(A3 118%, A3 150%)**<br>▶ **확대답안지(A3 표기형, A3 기입형)**<br>▶ **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** |

## ▣ 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, 임신부

| | |
|---|---|
| 지원요건 | **거동 또는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 지체장애인, 임신부** |
| 구비서류 | **≪장애인증명서 사본≫**<br>**▣ 장애인증명서**: 장애인등록증, 장애인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중 1<br>**※ 제출기한: 2019. 8. 9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<br>**≪임신부≫**<br>**▣ 의사 소견서 1부**<br>**※ 제출기한: 2019. 8. 9.(금) 우체국 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인정**<br>**※ 의사소견서 필수 기재사항**<br>ex) 상기인은 임신( )주, 필기시험 예정일(2019. 10. 19.)을 전·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,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. |
|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 | **▶ 하지 지체장애인: 별도(저층)시험장(실) 배정 (좌석간격 조정)**<br>**▶ 임신부: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, 별도 시험실 배정 (좌석간격 조정)** |

## 【충청지방우정청 주소】

| 지 역 | 우정청명 | 주소 | 전화/팩스 |
|---|---|---|---|
| 대전·세종·충북·충남 | **충청지방우정청** |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11(둔산동 1408)<br>충청지방우정청 인력계획과 ㉾ 35239 | 042)611-1274<br>0505-005-1657 |